

[별표 1]

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년 장기요양수가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재가 월 한도액		방문요양 시간당 단가			시간 당 본인부담금(원)		
등급	월 한도액(원)	분류번호	분류	금액(원)	일반15%	경감9%	경감6%
1등급	2,306,400	가-1	30분 이상	16,940	2,541	1,525	1,016
2등급	2,083,400	가-2	60분 이상	24,580	3,687	2,212	1,75
3등급	1,485,700	가-3	90분 이상	33,120	4,968	2,981	1,987
4등급	1,370,600	가-4	120분 이상	42,160	6,324	3,794	2,530
5등급	1,177,000	가-5	150분 이상	49,160	7,374	4,424	2,950
인지	657,400	가-6	180분 이상	55,350	8,303	4,982	3,321
		가-7	210분 이상	61,670	9,251	5,550	3,700
		가-8	240분 이상	68,030	10,205	6,123	4,082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분	2025년 수가	일반 15%	경감 9%	경감 6%	기초생활 수급
차량 이용 (차량내60분이상)	86,480원	12,972	7,783	5,189	무료
차량 이용 (차량내40분이상 60분 미만)	69,180원	10,377	6,226	4,151	
차량 이용 (가정내 60분)	77,970원	11,696	7,017	4,678	
차량 미 이용	48,690원	7,304	4,382	2,921	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재환자(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본인부담9%(감경40%) 본인부담6%(감경60%)